##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69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도종환·김승원·박 정

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

이상헌 · 임오경 · 전용기

홍정민 의원(10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기관명칭이 도박 문제 예방·치유의 업무 영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도박규제 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라는 단어로 인하여 도박문제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만으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므로 기관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 방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도박문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률 제 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제와"를 "문제 예방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이하 "예방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을 "예방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센터에"를 "예방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는"을 "예방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센터에"를 "예방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및 제7항 중 "센터는"을 각각 "예방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센터가"를 "예방원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센터가"를 "예방원이"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센터에"를 "예방원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센터의"를 "예방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센터에"를 "예방원에"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센터의"를 "예방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에"를 "예방원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 법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원) ①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	
로 인한 중독 및 도박 <u>문제와</u>	문제 예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u>방과</u>
활동을 하기 위하여 <u>한국도박</u>	<u>한국</u>
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	도박문제예방원(이하 "예방원"
<u>다)를</u> 설립한다.	<u>이라 한다)을</u>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예방원은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③ <u>예방원에</u>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	
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	
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④ <u>예방원은</u>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	⑤ <u>예방원에</u> -
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6	<u>센</u>	터		대통	통령	령.	<u> </u>	己ろ	성하
는	바	에	叫	4	메	사	업수	견도	개
시	전	까ㅋ	시	l 업	계-	획	및	예심	<u></u> 산안
을	작	성.	제출	하	여	위	원호	회의	승
인설	슬	받ㅇ	}oţ	한	다.	0	를	변기	경하
려는	= .	경우	-에.	도	生さ	한	같다	₹.	

- ⑦ <u>센터는</u>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8 센터가 아닌 자는 <u>한국도박</u> 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u>센터에</u>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 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 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 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

<u>    예방원은</u>
· 
· ⑦ <u>예방원은</u>
,
⑧ 예방원이한국도
박문제예방원
⑨ <u>예방원에</u>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u>예방원의</u>

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 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 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 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 ② ~ ⑥ (생 략)
-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 의 부과·징수를 <u>센터에</u> 위탁할 수 있다.
- ⑧・⑨ (생 략)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8·9 (현행과 같음)
세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현행과
간음)

-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 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 제의 예방·치유와 <u>센터의</u>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u>예방원의</u>
·
③
<u>예방</u>
위에